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sup>1)</sup> 급여체계 개선방안

*Development of reward system for family carer in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수급대상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가족요양비가 제공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 등의 제한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지 못하다. 반면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이 확대되면서 가족요양에 대한 현금급여와 같이 이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 가족 요양보호의 급여수준의 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요양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요양 현금급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제시하는 가족요양 현금급여는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급여로서 동거와 비동거와 무관하게 가족에 대한 보호를 포괄하되, 요양보호사 자격여부에 따라서는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금급여의 경우 공단의 직접 지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 관리를 위한 점검 및 교육 등의 시스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급여의 수준은 현재의 동거가족요양보호사 급여수준으로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동거가족요양보호에 대해 우선 적용, 비동거가족요양보호, 가족요양비의 급여수준 인상 및 대상자 확대의 3단계로 수행될 것을 제시하였다.

## 1. 들어가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2에 의하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재가급여의 우선 제공원칙임과 동시에 공적 제도 도입 이후에도 가족의 비공식적 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다. 하지만 현 보험제도에서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 도서벽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수급자가 가족 이외의 타인에 의해서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가족요양비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수급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족원인 수급노인에게 방문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1) 본 글에서 ‘가족요양’이란 가족이 수급노인을 요양하는 형태로서 가족요양비, 동거가족요양보호, 비동거가족요양보호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함.

가족요양보호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요양보호는 엄연히 요양보호에 대한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가족요양에 대한 현금 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내에서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호에 대한 급여인 가족요양비, 동거가족 요양보호, 비동거가족 요양보호는 급여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대상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여수준의 차이로 인해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한 불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12). 동거가족요양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이전 등을 통해 비동거가족 요양보호로 급여를 받거나,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간의 교차 급여를 통해 실제로는 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서류상 타인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장하여 많은 급여를 받는 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가족요양 급여체계가 갖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가족요양에 대한 지원방식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현황 및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는 가족요양비와 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로 구분된다. 현재 보험제

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가족요양비와 동거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족요양비 현황 및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를 가족이 돌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가족요양비 지급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자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는 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와 같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급여와는 달리 매우 제한된 상황에 있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는 급여의 성격이다.

가족요양비는 제한적 급여의 성격으로 인하여 2009년 12월 현재 전국 861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서비스 이용자 228,980명의 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요양비의 급여액수는 수급자의 등급과 무관하게 월 15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이는 1~3등급의 평균 월한도액 975,500원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현재 가족요양비의 경우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부족과 같은 경우는 적절한 서비스 인프라 공급의 책임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

## 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족요양비 조항

**제 24조 (가족요양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 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하지 못하며 또한 그에 상응하는 급여액을 보상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동거가족 원을 보호하는 동거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을 비교할 때, 가족요양비 또한 가족에 의한 요양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요양비가 지급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족에 의한 보호를 선호함에 따라 가족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2)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에 의한 가족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동거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동거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청구를 통해 급여를 받는 형태이다. 이와같은 형태는 엄밀히 말해 가족 보호에 대한 보상체계는 아니며 방문요양급여로서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

사가 동거가족인 것이다.

그러나 동거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의 급여와는 달리 급여 인정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도도입 초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 2008-66호)에 의해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서비스는 소요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1일 최대 120분 미만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한다. 이 경우 동거가족 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라고 고시하였다(2008.6.30). 이는 일반 방문요양의 경우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에 의한 요양서비스는 50%수준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요양보호사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제도 도입 1년후인 2009년 6월 동거가족요양보호사는 급여 인정시간을 90분으로 축소하고, 같은 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같은 동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각각 거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시켜 재고시

를 하였다(2009.6.30). 이는 동거가족 방문요양 급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부당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동거가족요양보호사는 1일 90분의 방문요양을 인정받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평균 임금(7,000원)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31만원가량의 수입이 생긴다. 동거가족 방문요양 급여는 제도 도입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10월 현재 요양보호사의 24%이며, 총 급여의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안 사항 관련 합동토론회, 2009.12).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방문요양기관, 그리고 기존에 노인을 돌보던 가족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수강생 모집의 일환으로 가족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방문요양기관에서도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의 홍보를 통해 수급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동거가족 요양보호 급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던 가족은 동일한 돌봄을 하면서 이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됨으로 가족요양보호가 급증하였다. 또한 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시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 이용되었다.

동거가족 요양보호제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동거가족 요양보호와 타인에 의한 방문요양과의 급여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편법과 부

당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많이 소속된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기획심사결과 94개의 운영센터를 심사한 결과 68.8%의 기관에서 부당 사례가 나타났다. 부당사례는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동거사실을 숨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 다른 동거가족요양보호사와 서류상 교차 보호하는 형태로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 등 타인 또는 비동거가족 요양급여와의 차액을 더 받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안 사항 관련 합동토론회, 2009.12).

동거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요양비와의 형평성, 비동거가족요양 등과의 형평성을 두고 여러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동거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후에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이라는 이유로 타인이 서비스를 제공할때와 다른 급여액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한 보상체계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효 의식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바란다는 것을 적잖아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급여체계와의 차별에 대해서는 불평등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보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동일한 가족원에 의한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의 특성을 갖고 있는 가족요양비, 동거가족요양보호, 비동거가족

요양보호는 가족요양비는 월 15만원을 급여하지만, 동거가족요양보호는 월 31만원 가량이 지급되며 비동거가족요양보호는 7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각 제도에서의 급여수준 차이로 인한 제도의 부적합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거가족 요양보호 제도의 경우 가족 보호에 대한 보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가족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가족요양비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가족요양에 대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도에서 가족요양에 대해 적법하며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요구되어진다.

### 3. 외국의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정책

최근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에서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장기요양보호 보상 및 지원제도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가족보호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정책은 국가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보호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정책은 현금지원과 휴가 및 정보제공 등의 기타 제도로 구분되어진다.

가족 보호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에 대한 보상차원의 현금급여(스웨덴, 영국, 호주 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급여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현금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가 있다. 가족에 대한 보상차원의 현금급여의 경우 호주는 보호자 급여(carer payment)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 제약에 대한 소득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호자 수당(carer allowance)으로서 가정에서 일상적인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비공식적 요양보호자에 대해 다양한 현금급여를 제공하거나 지자체가 요양보호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는 공적기관의 요양보호사(헬퍼)와 동등한 급여가 지불되며, 단 65세 미만에 한정되어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이용자주체형재가수발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는 개인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헬퍼를 고용하여 감독, 지시할 수 있으며, 급여는 특정시간에 대해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때 친척 등은 지급 대상이 되지않지만,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의 현금급여는 가족 보호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수급자가 현금급여를 통해 가족원에 의한 보호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수급자 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즉, 이들 현금급여의 경우 가족보호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의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가족보호에 대한 보상방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급여 정책은 국가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에 대한 보상은 현금급여 뿐 아니라 기타 지원 제도가 국가별로 활용되고 있다. 호주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요양보호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 등은 소득세 감면 정책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는 가족 개호교실, 가족개호자교류사업, 가족개호헬퍼 수간지원 등의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보상 방안: 가족요양 현금급여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가족내에서의 노인수발로 인한 부양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화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급여체계에서 몇 가지 불형평성의 모습을 갖고 있다. 우선 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급여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대해 1~3의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반드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판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수급자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가족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가족요양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공적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와 가족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 제도에서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은 가족요양비 제도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동거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급여는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가족요양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족요양 보상을 둘러싼 여러 대상자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을 활용한 불법과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체계의 개편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체계 개선방안으로서 가족요양 현금급여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금급여는 외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급여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현 1~3등급) 가족의 노인보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다. 외국에서의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현금급여의 성격이 아닌 가족요양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서 현금급여이다.

가족요양 현금급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한다. 우선 급여대상자의 범위, 급여수준, 가족요양비와의 관계, 급여지급방식 및 서비스 질관리 방식 등에 있어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들 정책설계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급여라는 점과 대상자간의 형평성, 타급여와의 형평성,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대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할 것이다.

가족요양 현금급여와 관련해서 첫째 선택되어야 할 것은 가족요양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

표 2. 가족요양 현금급여 도입시 선택사항 및 도입방안

구분	선택사항	가족요양 현금급여 방안
가족의 범위	동거가족 vs 비동거가족	비동거가족 포함
가족보호자의 자격여부	요양보호사 vs 자격기준없음	요양보호사 자격 필수 (자격없을시 가족요양비 수준 지급)
급여수준	등급별 차등 vs 등급별 동일	차등 필요(가족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라는 차원)
	현물급여의 일정비율 vs 현동거가족요양보호 급여수준 vs 가족요양비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수가에서 본인부담금과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수준(단,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 별 이용비율 수준 반영)</li> <li>• 현 동거가족요양보호 수준</li> </ul>
관리체계	요양기관 이용 vs 공단 직접관리	공단 직접관리 방식 도입
가족요양비와의 관계	동일취급 vs 차등	가족요양의 요양보호사자격여부를 기준으로 차등
혼합급여 인정여부	혼합급여 vs 혼합급여 불인정	혼합급여 불인정, 단, 방문요양과 다른 성격의 방문간호 등은 일정한도 인정

족범위와 가족의 거주형태, 그리고 가족의 자격 증 필요 여부 등이다. 가족의 범위는 현재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범위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는 넓은 가족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의 비공식적 자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의 거주형태에 따른 가족요양의 범위에 대한 선택으로 동거가족과 비동거가족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현 제도가 동거가족과 비동거가족의 급여 인정시간의 차이를 뚫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또한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노인을 돌보는 형태 등의 가족형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족은 동일하게 간주할 것을 제시한다. 단, 비동거 가족일 경우 적절한 보호와 응급시 긴급 보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거리내에 거주할 경우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차로 이동할 경우 1시간 이내의 거주하는 가족에 국한하는 방안이다.

가족요양의 기준으로 가족요양을 하는 가족의 요양보호사자격을 의무화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현재 동거가족 요양보호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가족원의 보호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가족요양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격증이 있을 경우 타 요양보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이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격증이 없는 가족원과는 급여액의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요양 현금급여 설계에서 선택되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급여와 관련된 사항이다. 우선 가족요양 급여수준을 어느정도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가족요양비는 월 15만원 수준이며, 동거가족 요양보호는 월 31만원 수준, 비동거가족 요양보호는 약 70만원 수준(1일 4시간 노동, 급여의 60% 수급 기준)임을 감안할 때 가족요양 현금급여의 급여수준은 최소 30만원 이상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급여수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상수준의 인하로 인하여 가족요양의 중요성이 감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외부의 요양보호사 수준의 급여수준을 택할 경우 가족요양 현금급여가 가족내 보호의 순 기능에 대한 과잉 보상일 수 있으며, 또한 자발적 가족 보호에 대한 좋은 뜻을 왜곡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의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수준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가족요양 현금급여는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현재 동거가족요양보호사 수준을 택하기 보다는 현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과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평균 서비스 이용수준 등을 고려한 급여수준 선택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단, 자격증이 없는 가족에 의한 보호의 경우 현재의 가족요양비 보다는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여를 둘러싼 또다른 선택사항으로 수급자의 등급차이를 인정할 것인가로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족요양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현 제도의 수가 등급별 차

등을 둔 것을 반영하여 가족요양 현금급여 또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가족요양 현금급여에 대한 관리체계이다. 이는 공단에 의한 직접적 현금급여 제공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동거가족 요양보호의 경우 방문요양기관을 통해 급여신청 등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방문요양기관에서 행정처리에 부합하는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고 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방문요양기관에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부정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족요양 현금급여는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가족요양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가 문제로 제기되어진다. 서류상으로는 동거가족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요양에 대한 정기적인 공단의 방문을 통한 심사와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가족요양 현금급여 도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족요양비와의 관계 정립이다. 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어 두 제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요양비 제도는 가족내의 노노케어 등을 고려하여 수급 기준의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가족요양 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대해 타 장기요양 서비스의 혼합급여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는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 측면에서는 가족요양 현금급여의 경우 가족보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으로

현금급여를 이용하여 별도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는 가족보호에 대한 보상이 아닌 수급자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현금급여의 성격으로 전환됨으로써 가족보호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흐려지게 된다. 또한 가족요양 현금급여를 활용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이는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흐려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요양 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혼합급여는 인정하지 않되 방문요양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방문간호 등은 일정시간

이하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순탄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제도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단계적 도입을 제안한다. 우선 동거가족 요양보호에 대해 우선적인 현금급여를 안착시키며, 2단계에서는 비동거 가족 요양보호까지 확대,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 요양에 대한 가족 요양비 인상과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